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안)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소관 -

1.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반 감리대상 감리원 1명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을 일률적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완화하여 영세한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규모 현장 감리활동의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경우에는 1개 대상으로 산정하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주요내용

○ 일반 소방공사감리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6조)

- 1명의 감리원이 5개 감리현장을 주1회 이상 방문(1일 1개 대상)지도토록 하는 것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 2개 대상이 차량주행거리로 30km 이내일 경우에는 1개 대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제1항제2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 2개 대상이 차량주행거리로 30km 이내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①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생략) 2. 영 별표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 다. (생략)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①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소방공사 감리현장 2개 대상이 차량주행거리로 30km 이내일 경우에는 1개 대상으로 산정하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인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